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9. 3 선고 2014가단58966 판결 [청구이의 및 점유회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대선에이디테크

피 고 1. A

2. B

변론 종결 2015. 7. 9.

판결 선고 2015. 9. 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의 부동산인도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1. 16.자 C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.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"D은 원고에게 406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"는 내용의 지급명령(2012차6515)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. 10. 15. D 소유이 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1. 16. C로 부동산인도명령(이하 '이 사건 인도명령'이라 한다)을 받았고, 집행관은 2014. 3. 20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대리인 F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.

라.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"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유치권을 침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"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9. 4. "원고가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을 뿐 피고들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"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(2014가합2328, 이하 '이 사건 대상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,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1997. 4. 25.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),

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인 집행권원은 이 사건 인도명령이고, 이 사건 인도명령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채무인데, 피고들이 인도집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채무는 이행되어 피고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인도집행이 마쳐진 후 제기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

3.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우나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바,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유치권자로서의 적법한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인도집행은 원고의 적법한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청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청구는 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상구

부 동 산 목 록

1. (1동 건물의 표시)

서울 양천구 [] 의 16필지 [] 아파트 제102동
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17층 아파트 및 상가
 1층 1784.58㎡
 2층 1339.05㎡
 3층 1076.64㎡
 4층 1074.21㎡
 5-14층 각 1188.78㎡
 15-17층 각 258.03㎡
 지하1층 4309.095㎡
 지하2층 4886.023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서울 양천구 []	대 48.1㎡
2. 서울 양천구 []	대 1.8㎡
3. 서울 양천구 []	대 249.7㎡
4. 서울 양천구 []	대 149㎡
5. 서울 양천구 []	대 1066.8㎡
6. 서울 양천구 []	대 576.8㎡
7. 서울 양천구 []	대 799.1㎡
8. 서울 양천구 []	대 501.8㎡
9. 서울 양천구 []	대 918.1㎡
10. 서울 양천구 []	대 599.9㎡
11. 서울 양천구 []	대 1486.8㎡
12. 서울 양천구 []	대 735.5㎡
13. 서울 양천구 []	대 1076.8㎡
14. 서울 양천구 []	대 927.1㎡
15. 서울 양천구 []	대 1582.7㎡
16. 서울 양천구 []	대 945㎡
17. 서울 양천구 []	대 1118.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지하층 제상가비01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304.41㎡

(대지권의 표시)

대지권의 종류 : 1 - 17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: 12783.1분의 202.67

2. (1동 건물의 표시)

서울 양천구 [] 외 16필지 [] 아파트 제102동
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17층 아파트 및 상가

1층 1784.58㎡

2층 1339.05㎡

3층 1076.64㎡

4층 1074.21㎡

5-14층 각 1188.78㎡

15-17층 각 258.03㎡

지하1층 4309.095㎡

지하2층 4886.023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서울 양천구	[]	대 48.1㎡
2. 서울 양천구	[]	대 1.8㎡
3. 서울 양천구	[]	대 249.7㎡
4. 서울 양천구	[]	대 149㎡
5. 서울 양천구	[]	대 1066.8㎡
6. 서울 양천구	[]	대 576.8㎡
7. 서울 양천구	[]	대 799.1㎡
8. 서울 양천구	[]	대 501.8㎡
9. 서울 양천구	[]	대 918.1㎡
10. 서울 양천구	[]	대 599.9㎡
11. 서울 양천구	[]	대 1486.8㎡
12. 서울 양천구	[]	대 735.5㎡
13. 서울 양천구	[]	대 1076.8㎡
14. 서울 양천구	[]	대 927.1㎡
15. 서울 양천구	[]	대 1582.7㎡
16. 서울 양천구	[]	대 945㎡
17. 서울 양천구	[]	대 1118.1㎡

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지하층 제상가비02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2.96㎡

(대지권의 표시)

대지권의 종류 : 1 - 17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: 12783.1분의 87.62

3. (1동 건물의 표시)

서울 양천구 [] 의 16필지 [] 아파트 제102동
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17층 아파트 및 상가

1층 1784.58㎡

2층 1339.05㎡

3층 1076.64㎡

4층 1074.21㎡

5-14층 각 1188.78㎡

15-17층 각 258.03㎡

지하1층 4309.095㎡

지하2층 4886.023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서울 양천구	[]	대 48.1㎡
2. 서울 양천구	[]	대 1.8㎡
3. 서울 양천구	[]	대 249.7㎡
4. 서울 양천구	[]	대 149㎡
5. 서울 양천구	[]	대 1066.8㎡
6. 서울 양천구	[]	대 576.8㎡
7. 서울 양천구	[]	대 799.1㎡
8. 서울 양천구	[]	대 501.8㎡
9. 서울 양천구	[]	대 918.1㎡
10. 서울 양천구	[]	대 599.9㎡
11. 서울 양천구	[]	대 1486.8㎡
12. 서울 양천구	[]	대 735.5㎡
13. 서울 양천구	[]	대 1076.8㎡
14. 서울 양천구	[]	대 927.1㎡
15. 서울 양천구	[]	대 1582.7㎡
16. 서울 양천구	[]	대 945㎡
17. 서울 양천구	[]	대 1118.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지하층 채상가비03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202.79㎡

(대지권의 표시)

대지권의 종류 : 1 - 17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: 12783.1분의 133.64

끝.

